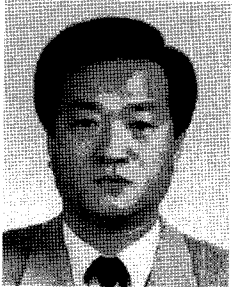


산림의 보호정책



오 석 주
산가농원 대표

금년 여름, 온 지구촌을 대재앙으로 할퀴고 간 수마(폭우, 폭풍, 해일등)를 보고 듣고 겪으면서 자연의 재앙은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실감하였다.

국토의 70~80%가 산림과 임야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차제에 장기적인 산림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하므로써 항구적인 수해방지책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다. 이에 국내외 전문학자들의 이론을 묶어 산림의 보호정책에 관한 소견을 상재코자 한다.

산림의 보호정책

A. 개간제한

개척 초기에는 산림이 풍부하고 단지 농지(墾地)의 획득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있던 산림을 벌채 또는 소각하는 과정을 밟지만, 그 후에는 산림의 경제적 및 보안적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어 임지의 유지 확충에 유의하게 된다. 이것이 개간 제한에 관한 정책이다.

그러나, 개간 제한은 원래 절대적인 요구는 못된다. 개척초기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적

지이면 개간하여 농토나 대지로 하는 것이 국토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모두 개간에 노력하여 직영 또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간제한의 행정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개간 금지이며 다른 하나는 개간 허가제이다. 개간의 절대적 금지는 토지의 유리한 이용법을 저지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채용되지 않고 다만 보안림에만 적용하는 나라가 있다. 개간 허가제는 산림개간에 앞서 소유자로 하여금 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산림을 임의로 무제한 개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효하다.

산림개간이 국토 보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 금지를 발동시키는 것이 통례이며, 임산물 수급 계획이나 기타의 요청으로 산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 금지를 발동시키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는 영림 계획의 결정권의 개간이나 보안림 내의 개간을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산림법에 정해 있다. 임지 유지책으로서의 개간 제한은 임지가 다른 용도에 전환되는 것을 보안상의 목적으로 방지한 뿐이고, 해당 임지의 임상 개량, 산림자원 충실 등의 적

극적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수해가 심한데서는 이미 개간된 농지화한 토지라도 수해의 원인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복구시킬 필요까지 느끼게 된다. 이것은 이미 개간된 임지를 보안림 시설 지구에 편입시켜서 산림으로 복구시키는 수단을 취하고, 그 손해액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상하는 것이 좋다.

B. 토지이용 구분

임업을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농경지, 대지 등 다른 산림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토지에서 경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또 전기 타종용도(他種用途)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도 이용하고 있다. 임업의 임장에서 전자를 절대적 임지, 후자를 상대적 임지라고 한다. 임지의 개념은 기술적 개념인 동시에 경제적 개념이다.

베르그(Berg)에 의하면 토지가 적박하거나 험준하거나 또는 양자를 겸한 이유로 타종 토지 산업에 충용치 못하는 토지를 절대적 임지라 했고, 알버트(Albert)는 촌락에서 격리되었기 때문에 타종 이용에 충용되지 못하는 토지라고 했다. 가령, 순 기술적 견지에서 절대적 임지의 한계를 구한다면 그것은 문화의 정도에 따라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로는 많든지 적든지 경제적으로 유리한 이용이라는 데 표준을 두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산물 가격, 생산비, 운반관계 또는 인구증감 등에 의하여 어느 때는 절대적 임지가 되고 어느 때는 상대적임지도 되어 양자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임지가 타종이용에 전환되어 임지 축소의 기회에 직면되는 것은 상대적 임지이고, 절대적 임지는 이런 기회에 대해서 안정된 대신에 국토 보안적 작용이 도리어 크기 때문에, 그 임상 보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업 경영에 있어서 그 토지의 적성을 고려해서 영구히 임지할 것과 타종이용에 제공할 것을 구획 분별하지 않으면 경영의 기초를 확립할 수 없다. 이것이 토지이용 구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부터 산림기본조사에 착수하여 국유임야실태 조사와 토지이용구분 조사를 진행중이다. 전자는 국유림 경영상 편성 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지종구분(地種區分), 산림구분, 지황 및 임황조사 등이며, 후자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토지 능력을 급수로 표시하여 전답, 과수원, 목야, 특수수종, 적지 용재림, 적지 연료림, 적지제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농토가 적어서 영세농이 많음에 비추어, 임지가 농지로 개간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이며 국가 경제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황폐의 원인이 될 우려성 있는 임지의 개간과 지방적으로 인구의 밀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C. 산화경방

산림 위해중 가장 위험한 것이 산림 화재이다. 산림 화재는 일시에 다년간 적공한 축적을 소진할 뿐만 아니라, 적지(跡地)의 지력을 소모하여 화근이 먼 장래까지 파급케 한다. 산화의 원인은 거의 인위적이고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임야 화입(火入)이다. 그러므로, 산화 경방상의 필요에서 화입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화입은 화재경찰의 견지에서 뿐 아니라 황폐방지의 점에서도 중요시된다. 그것은 임야의 부식질을 소진하여 임지를 매우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화의 중요 원인은 화입개간의 연소, 산림노동자 나무꾼, 낙엽채취자, 수렵자, 기타 입화자(入火者)의 부주의, 취사, 담뱃불 등의 부주의와 군 사격 훈련 착탄지에서의 연소로 인한 것이 많다. 산화의 발생 계절은 입산자가 많고 기후가 건조하고 풍세가 강한 춘계 3월부터 5월까지와, 추계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이런 기간에는 산화 경방 강조기를 설정하고 특별 경방책을 수립하여 계몽선전, 화기단속, 감시소 설치 등 미연 방지에 노력함은 물론, 경방단 조직을 강화하여 발화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이나 그 근처에서 관의 허가 없이는

분화(焚火)나 화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서울 특별시장이나 도지사는 산림 소유자에게 방화선의 시설을 명령할 수 있고, 산림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산주나 산하 주민에게 산화 소방 동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산화의 예방 소방에는 무엇보다도 산하 주민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

D. 해충구제

우리나라 산림의 3대 해충으로는 송충이, 솔잎혹파리, 심식충(芯喰虫)이며, 그 중에서도 송충이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나방과, 미국 흰불나방이 급격히 만연되어 활엽수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송충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다만 심산유곡이 겨우 그 피해를 모면하는 형편이다. 지피물이 없고 건조한 소나무 순림에 그 피해가 극심하다. 솔잎혹파리는 이와 반대로 지피물이 풍부하고 다습한 음지의 침엽수림에 발생이 심하며, 전남전역, 전북, 경남, 경기도 일부를 침범하여 그 피해 면적이 확대되어 간다. 심식충의 성충은 소나무류의 신아(新芽)를 식해(喰害)하여 초여름에 신아를 적번 고사시키고, 유충은 수간에 선공 침식하여 쇠약하게 만드는데, 쇠약한 수목에 집중 침해하는 습성이 있다.

미국 흰불나방은 최근 수입한 묘목에 부착하여 도입된 해충인데, 식성과 번식력이 왕성하여 급속히 만연될 기세를 보인다. 현재 서울 근방에 만연중이다. 약제 살포와 인력 포살에 노력하고 있으나 더욱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요구된다.

해충 구제에는 천적 이용의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천적을 보호번식하도록 하는 것이 농림업에 있어 필요하다. 조류는 해충 구제의 큰 역할을 하므로 금렵기간, 금렵제한등을 설정함이 좋다.

E. 황폐방지

산림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 방법을 취하지 않고 막연한 이용에 방임한다면, 임상은 파괴되고, 지력을 소모되어 나중에는 임목을 생산할 수 없

는 황폐지로 화하여 산림 자원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국토보안에도 위해를 끼치게 된다.

벌채 적지에 적당한 재조림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역시 황폐를 면하지 못한다.

대체로 산림에는 그 입지림이 황폐되는 원인의 행위에는 벌채 방법과 조림방법이 있으므로, 황폐단속의 중요 대상도 자연히 벌채 방법과 조림 방법이 되고, 그 외에 부산물 이용도 황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규정(規定)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황폐의 우려가 있는 산림은 보안림에 편입시켜 그 사업을 감독하고 규정에 위반하여 벌채하거나 부산물 이용을 한 것은 조림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황폐를 초래할 행위로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석, 수근, 절지 등 부산물 채취와 가축 방목등이다. 도이칠란트 산림 황폐 방지법은 황폐 행위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벌채전의 미숙 임분의 개별

이것은 침엽수 교림에서는 50년 이하를 미숙 임분으로 한다.

(2) 10~50ha 산림에서는 그 임구 면적의 1/2, 50~100ha의 산림에서는 그 임구 면적의 1/30, 100ha 이상의 산림에서는 그 임구 면적의 1/40 이상의 벌채 면적이 이에 해당한다.

(3) 간벌도

당해 수종의 동일 임령 및 지위급에 있어서 정상적 임분의 축적의 5할 이상에 달하는 벌채는 간벌로 보지 않고, 개별로 본다. 따라서 (1)의 규정에 따른다. 유경림의 벌채, 과도의 간벌 및 벌채종으로서의 개별이 황폐행위의 요소가 되어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산림보호 정책에 관한 소견을 묶어서 피력하였거니와, 산림의 조림과 보호는 일조일석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말고 과학적인 사고와 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되리라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원동력이며, 우리모두가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재산이 아닐 수 없다. 